

안산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-88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0. 13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 습득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「자활근로사업」이 2025.12.31.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「자활근로사업」을 재위탁 하고자 함.

위탁사무명

- 안산시 자활근로사업

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5조(자활급여)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제12조(자활사업의 위탁시행) 및 제20조(자활근로), 제21조의3(자활급여의 위탁)
 -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(민간위탁 사무) 및 제17조(재위탁)

※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민간위탁 기간 및 사무내용

- 민간위탁 기간 : 2026. 1. 1. ~ 2028. 12. 31.(3년)
- 민간위탁 사무내용
 - 자활근로사업 운영 전반
 -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일자리 제공
 -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
 -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

위탁시설 개요 및 현황

- 사업개시 : 2006년 ~ 현재
- 현(現) 수행기관 : 3개소

(’25. 8. 31.기준 / 단위: 명, 천원)

기관명	소재지	종사자	자활사업 참여인원	’25년 예산	최초위탁일
계		22	239	4,175,556	
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	상록구 양지편로 32, 5층 (이동)	10	112	2,065,313	’ 06.01.01.
경기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	단원구 화정로 95, 3층 (와동)	11	125	2,065,313	’ 06.01.01.
안산선부종합사회복지관	단원구 화정로 9 (선부동)	1	2	44,930	’ 07.09.01.

수탁자 선정방식

- 위탁방법 : 현(現) 수행기관 선정 · 위탁

☞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6조 및 보건복지부 「2025년 자활사업안내」에 따라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·군·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고 기(既) 수행 중인 기관 선정 가능

☞ 시장진입성 · 자활기업창업전망 · 수익금발생 · 참여자의 자립 유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시·군·구청장이 결정

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: 【붙임 2】

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3】

방침결정문 : 【붙임 4】